

# 강의평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전문제정 2019.07.24. 개정 2022.04.04., 2024.03.01.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강의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의평가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기능)

강의평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강의평가 문항 구성에 관한 사항
2. 강의평가 시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
3. 기타 강의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

## 제3조 (구성)

위원장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각 학부장(6명)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2.04.04., 2024.03.01.>

## 제4조 (임기)

- ①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## 제5조 (위원장의 직무)

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## 제6조 (회의)

- ①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7조 (간사)

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교무팀 직원으로 한다.

## 제8조 (회의록의 작성)

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(2019.07.2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3.0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